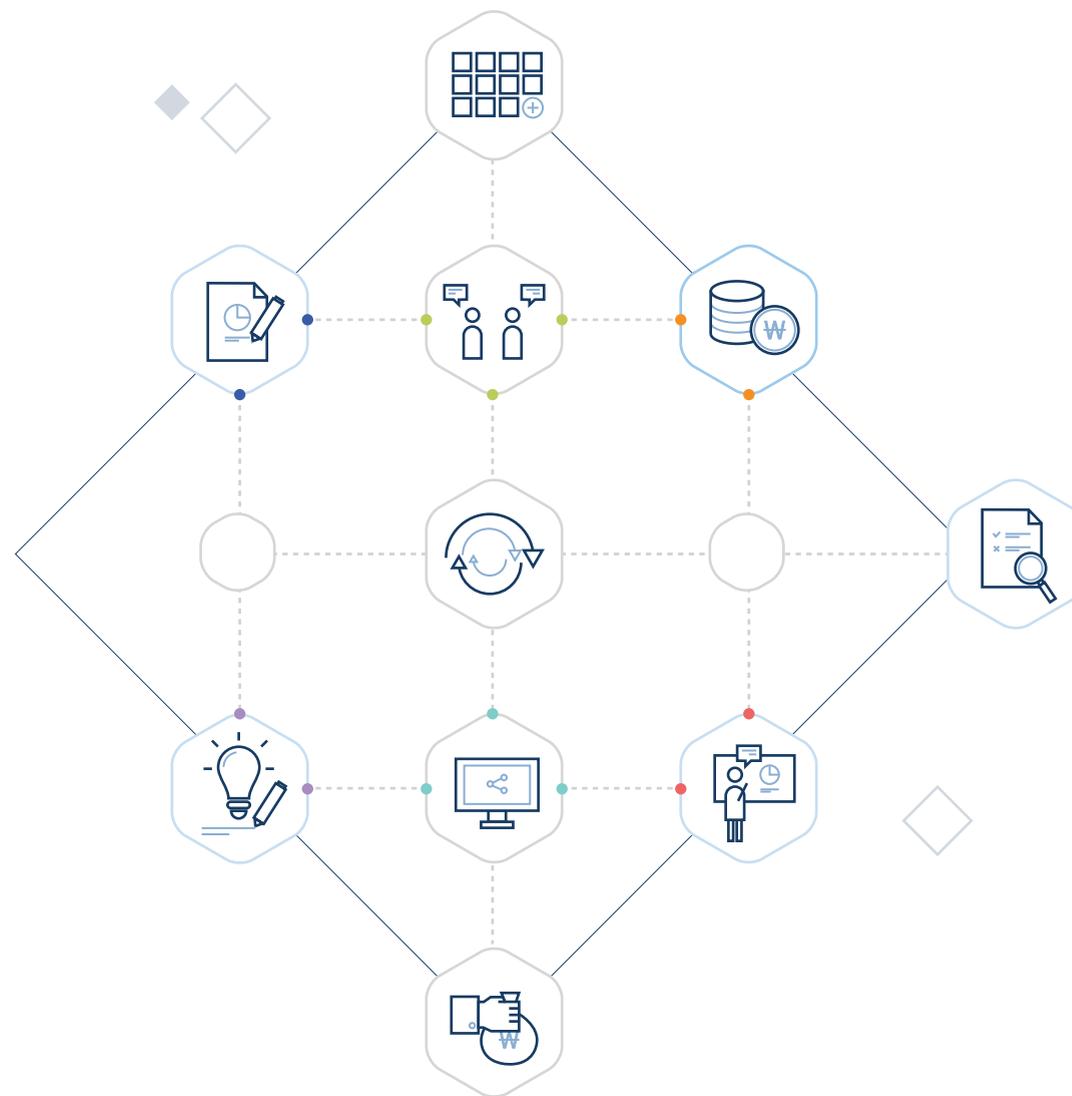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 Contents

## I. 평생교육사는

- 평생교육사의 직무
- 평생교육사의 활동 영역

## II.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 III.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평생학습시대  
그 중심에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 I.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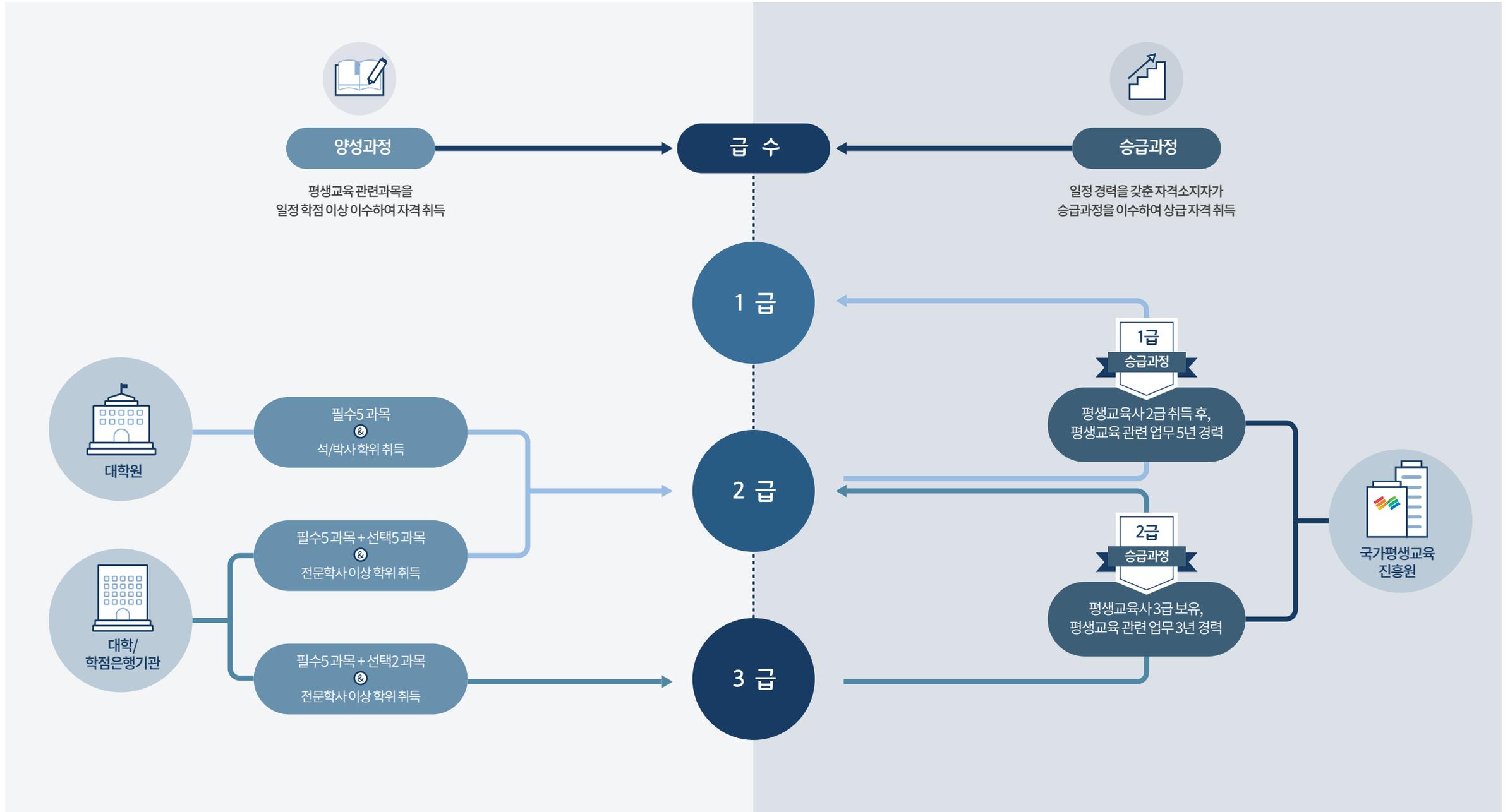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br>·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시·군·구평생학습관   |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br>·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br>· 학점은행기관<br>·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참고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교육사의 직무분석과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ISSUE PAPER 평생교육사 배치활성화 방안 연구

## II.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되며 이수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근거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2급, 3급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흐름도



08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 2급   |   |  |
|--|---|--|
| 대학원  | 대학 / 학점은행기관                             |  |
| <b>1호</b><br>대학원 재학생                           | <b>2호</b><br>대학 재학생<br>/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 <b>3호</b><br>대학(원) 졸업생<br>/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 필수5과목(15학점)<br>※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br>Ⓢ 석/박사 학위 취득 | 필수5과목+선택5과목(30학점)<br>Ⓢ 전문학사 학위 취득       | 필수5과목+선택5과목(30학점)                            |

| 3급                                      |  |
|---|--|
| 대학 / 학점은행기관                             |  |
| <b>1호</b><br>대학 재학생<br>/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 <b>2호</b><br>대학(원) 졸업생<br>/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 필수5과목+선택2과목(21학점)<br>Ⓢ 전문학사 학위 취득       | 필수5과목+선택2과목(21학점)                            |

09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안내

\*대학:시간제 등록 포함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2급, 3급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

|             |   |
|-------------|---|
| <b>실천영역</b>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 <b>방법영역</b>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수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 선이수 과목                              | 이수기관                          | 현장실습기관   | 이수기관                  |
|-------------------------------------|-------------------------------|--|-----------------------|
| 대학/학점은행기관: 필수 4과목<br>대학원: 필수 3과목 이상 | 사전교육<br>· 실습OT(필수)<br>· 실습세미나 | 4주 160시간 이상<br>-----<br>실천적 경험을 통해<br>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 실습최종평가회<br>성적 및 학점 부여 |

####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요건

현장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 지도가 가능한 평생교육사가 근무해야 합니다. 실습 지도가 가능한 평생교육사는 1급 자격소지자, 2년 경력 이상의 2급 자격소지자, 3년 경력 이상의 3급 자격소지자입니다. (경력은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한하며 자격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성과정의 과목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은 자격취득자가 일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상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입니다.



## STEP 1

### 승급과정 신청자격요건 충족

- 1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급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2

### 승급과정 신청 및 심사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 일정은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연수일정 및 신청서류 등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연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연수 참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업무' 종사기간 경력 인정방법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 참조

## STEP 3

### 승급과정 이수

-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연수가 진행되며, 연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승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STEP 4

### 상급 자격취득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상위 급수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III.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합니다.



\* 시간제등록(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                   |   |  |
|-------------------|---|--|
| <b>공동서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li> <li>· 최종학력 증명서 1부</li> <li>· 성적증명서 1부</li> <li>· 기본증명서(특정) 1부</li> <li>·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li> </ul> |  |
| <b>해당자별 구비서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학위 취득 관련 서류</li> <li>· 외국국적자 관련 서류</li> <li>·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1부</li> </ul>   |  |

\*당해 연도 자격증발급 신청요강참고

평생교육법 제 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조치가 이루어지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                   |   |  |
|-------------------|---|--|
| <b>공동서류</b>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
| <b>해당자별 구비서류*</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1부</li> <li>· 성명 정정 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표 초본 1부</li> </ul> |  |